

의견서

1.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의견제출자 : (주)디앤케이캠텍
- 대표자명 : 민병환
- 주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165
- 전화번호 : 041-330-5700

2. 개정안

고시 시행전 건축 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의 신청 및 건축 신고 또는 용도 변경 허가의 신청을 한 건축물은 이전 고시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3. 검토안

현재 대부분의 단열재 업체들은 2022년 2월 11일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로 대부분의 준불연 성적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와 관련하여서 현재 준불연 성적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 하며 하기와 같습니다.

‘단열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고시로 진행한 준불연 시험에서 적합할 경우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와 관련하여 기존 준불연 시험성적서의 경우 모두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서 업체들 모두 신규로 성적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에서 개정된 고시이며 준불연 성적서의 경우 동일한 시험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추가 의견

해당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면 추가로 내부마감재료와 외장재 모두 준불연 시험성적서의 경우에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만을 규정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외장재의 경우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만 내부마감재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생산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하여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에서 외장재 준불연 제품과 내부마감재료 준불연 제품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하여 개정을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